

보 정 명 령 발 령 신 청

사 건	
원 고	
피 고	
위 사건의 원고는 피고의	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나 주소지를 알지 못하므로
피고의 송달가능한 주소를	신속하게 파악하고,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피고
(-)의 주민등록초본발급을 위한 보정명령을 발
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.	
	20
	위 원고